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73

제출연월일: 2019. 9. 6.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민신문고('19. 1. 30. 접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타 구군과의 감면 형평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 추가

나. 2019년 울산시 전환기 특정감사 지적사항('19.2.11 ~ 2.28.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근거 부재. 근거 마련 요망)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의 근거를 마련

다. 상위 법령(주차장법 제19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위임 조례 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범위 완화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 및 주민 편의 도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의거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경감 대상자에 자원봉사자 추가(안 제6조)

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반영(안 제12조)

3. 근거법규

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부서 사전 협의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없음(여성가족과-30727, 2019. 7.31.)

다. 입법예고: 2019. 8. 5. ~ 8. 26.(21일간) 의견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마. 현행 조례: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를”을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퍼센트를”을 “100분의 60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제4호 전단 중 “50퍼센트를”을 각각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00퍼센트”를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 본문 중 “50퍼센트를”을 각각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표의 가산금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주차요금 전액”로 하고, “주차요금의 200퍼센트”를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12조 중 “이내”를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0퍼센트를 감액”을 “100분의 50을 감경”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5퍼센트”를 “100분의 5”로, “18퍼센트”를 “100분의 18”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3퍼센트를”을 “100분의 3을”로 한다.

별지서식 [별표1] 표 하단 제5호 중 “50퍼센트의”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개정 98 · 10 · 1, 99 · 8 · 16〉〈개정 2004.10.29.〉〈개정 2014.12.29.〉〈개정 2019.4.15.〉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

(단위: 1구획당, 원)

구분	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30분 단위			1일 주차 요금	월정기 주차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이내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0:00
   나. 11월～ 3월 09:00～19:00
3.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단위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 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4. 대형차량(2.5톤이상, 25인승 이상)은 기준요금의 2배로 한다.
5.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주차요금 등) ① ~ ③ (생략)	제6조 (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 100분의 50을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2.---------- 100분의 60을 ------.
3.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3. ---------- 100분의 50을 -----. ----------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전문개정2008.6.9.>	4.---------- ---------- ---------- ---------- ---------- ---------- ---------- ----- ------ 100분의 50을 ---. ----------
5.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5. ---------- ---------- ---------- ---------- ---------- ----------전액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자창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 ---------- ---------- ---------- ---------- ---------- 100분의 50을 ----------.
8.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8. ----------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 ---------- ---------- ---------- 100분의 50을 ------.
9.「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증을 소유한 사람에게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9.---------- ---------- ---------- ---------- ---------- ---------- --- 100분의 50을 -------.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 ---------- ---------- ---------- ---------- ---------- --- 100분의 50을 --. -------- ---------- ---------- ----------.
<신 설>	1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가산금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단위 : 1구획당/원)	제7조(가산금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분	가산금	비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삭 제 〈 개 정 2000. 10. 9〉		
삭 제 〈 개 정 2000. 10. 9〉		
주차자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개 정 2000. 10. 9〉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구분	가산금	비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주차요금 전액	
삭 제 〈 개 정 2000. 10. 9〉		
삭 제 〈 개 정 2000. 10. 9〉		
주차자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요금 전액 〈 개 정 2000. 10. 9〉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요금의 2배	

이용하는 행위	〈 개 정 2000. 10. 9〉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④ (생 략)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18퍼센트로 한다.

⑥ (생 략)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주차 대수의

이용하는 행위	〈 개 정 2000. 10. 9〉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 ---------- ---------- ----------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00분의 50을 감경------.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00분의 5---------- 100분의 18---.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① ---------- ---------- ---------- 100분의 3을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근 거 법 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울산중구039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명	이홍숙	전화번호	052-290-39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	본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 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경감 대상자에 자원봉사자 추가, 공공 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근거 마련,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반영 등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7월 31일

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미경/052-290-4903)

교통과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2항에 해당

※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가. 울산 중구 자원봉사증 소유자 중 차량소유자 인당 월1회 연 12회 1시간 30분 이용(現 1회 평균 주차장 이용 시간, 1회 이용 요금 1,500원) 전제로 산출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계속적인 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등 미첨부 함.

- 인구대비 평균 차량 소유률 : 46%

(울산 중구 차량 소유자수 104,709명/ 울산 중구 인구수 226,713명× 100)

- 울산 중구 자원봉사증 소유자 중 차량소유자 : 4,795명

(울산 중구 자원 봉사증 소유자 10,423명 × 평균 차량 소유률 46% = 4,795명) - 4,795명× 12회× 1,500원× 20%(감면율) = 연간 17,262천원 세입 감소

나. 연 12회 이하 이용 예상되나 감면적용 1년 이후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수치 산출 가능

3. 작성자

○ 중구 교통과 행정 7급 이홍숙(290-3963)

[현행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997 · 7 · 15 조례 제51호 ┘
개정 1998 · 10 · 1 조례 제112호
1999 · 8 · 16 조례 제155호
2000 · 10 · 9 조례 제206호
2001 · 8 · 9 조례 제236호
2004 · 10 · 29 조례 제316호
(일부개정) 2005.07.25 조례 제340호
(일부개정) 2008.06.09 조례 제432호
(일부개정) 2010.07.12 조례 제517호
(일부개정) 2010.12.27 조례 제536호
(일부개정) 2011.07.25 조례 제549호
(일부개정) 2012.03.12 조례 제589호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03.26 조례 제591호
(일부개정) 2013.05.06 조례 제645호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675호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722호
(일부개정) 2018.05.08 조례 제925호
(일부개정) 2019.04.15 조례 제978호
(일부개정) 2019.07.22 조례 제998호

제1장 총칙<개정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5><개정 2012.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2>

1. 공영주차장 이라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1 · 8 · 9><개정 2012.3.26><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2. 민영주차장 이라함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99 · 8 · 16><개정 2004.10.29>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주차장

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1 · 8 · 9> <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신설 2001 · 8 · 9> <개정 2013.12.12>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라 함은「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영 제10조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01 · 8 · 9><개정 2012.3.26><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영주차장

제4조 삭제 <2000 · 10 · 9>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개정 2014.12.29>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7.12><개정 2013.12.12>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 공단 <개정 2013.5.6>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개정 2013.5.6>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신설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 10 · 29> <개정 2013.5.6.><개정 2013.12.12>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및 평가액	3월단위로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월단위로선납

③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0.7.12><개정 2014.12.2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삭제 <2000 · 10 · 9>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04.10.29>

5.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신설 2004.10.29>

④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 · 규모 · 공용시간 · 공용개시일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 · 운영) <개정 2014.12.29>

① 법 제10조 및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당해 지역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26><개정 2013.12.12>

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만원으로하고,운영시간은 18:00~24:00까지로 한다.<개정2008.6.9><개정 2010.7.12><개정 2010.12.27><개정 2012.3.26><개정 2014.12.29>

③ 제2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3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2008.6.9><개정 2010.12.27><개정 2013.12.12>

④ 제3항에 따른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2008.6.9><개정 2013.12.12>

⑤ 주차요금 환부,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 · 10 · 29>

⑥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항 신설 2013.12.12><개정 2014.12.29>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 100분의 50 경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0분의 50 경감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100분의 50 경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분의 50 경감<개정 2019.7.22>

제6조 (주차요금 등) ①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 · 주차카드 · 주차표 등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9.4.15.>

② 삭제 <99 · 8 · 16>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0.7.12>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2005.7.25><개정2008.6.9><개정 2013.12.12><개정 2019.4.1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관용) 차량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개정 98 · 10 · 1><개정 2010.7.12><개정 2012.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12.12>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12.12>

다.「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04·10·29><개정 2005.7.25> <전문개정2008.6.9><개정 2012.3.26><개정 2013.12.12>

2.「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99·8·16><개정 2005.7.25><개정2008.6.9><개정 2013.12.12>

3.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개정 2012.3.26><개정 2013.12.12>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5·7·25><전문개정2008.6.9><개정 2013.12.12><개정 2019.7.22>

5.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신설 2004·10·29><개정 2019.4.15.>

6.「공직선거법」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신설 2010.7.12><개정 2013.12.12>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자창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10.7.12><개정 2012.3.26>

8.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10.7.12><개정 2013.12.12>

9.「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증을 소유한 사람에게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12.3.12><개정 2019.4.15.>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3.5.6><개정 2019.4.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7.12><개정 2013.12.12><개정 2019.4.15.>

⑥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요금이 발생할 경우 계산하지 않는다.<신설 2014.12.29>

제7조(가산금등) 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2배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10·9><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12>

(단위 : 1구획당/원)

구분	가산금	비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삭제<개정 2000. 10. 9>		
삭제<개정 2000. 10. 9>		
주차자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개정 2000. 10. 9>	

위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개정 2000. 10. 9>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7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2014.12.29>

제8조(주차요금 환부) <개정 2014.12.29>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대해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개정 2014.12.29>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제10조(주차장의 표지 등) <개정 2014.12.29>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개정 2013.12.12>

1. 명칭

2.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이용시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 성명 ·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99 · 8 · 16><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표지에 관한 규격 · 서식 · 그 밖의 표지 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제3장 부 설 주 차 장

제11조(부설주차장 설치)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12.12><개정 2005.7.25><개정 2014.12.29>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4.15.>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제13조 삭제<2001 · 8 · 9>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제6조의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할 때 별표 3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 · 8 · 16><개정 2013.12.12><개정 2019.4.15.>

③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④ 영 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01 · 8 · 9><개정 2013.12.1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12.29>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서 또한 같다.<개정 2005.7.25><개정2008.6.9><개정 2013.12.1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5.7.25><개정 2013.12.12>

⑤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 · 8 · 9>.<개정 2004 · 10 · 29><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 삭제 <99 · 8 · 16>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 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99 · 8 · 16><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12.12>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 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④ 융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18퍼센트로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제17조(과징금 징수)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1 · 8 · 9><개정 2013.12.12>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정

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18조 삭제 <99 · 8 · 16>

제19조(이용 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기간, 제한 구역 및 제한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 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다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주차 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8 · 10 · 1> <개정 99 · 8 · 16><개정 2001 · 8 · 9>.<개정 2004 · 10 · 29> <개정 2010.7.12><개정 2013.12.12>

②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 · 10 · 1><개정 2001 · 8 · 9><개정 2013.12.12>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8 · 10 · 1><개정 2001 · 8 · 9>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별표 5의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 · 10 · 1, 99 · 8 · 16>

제21조 삭제<2001 · 8 · 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 10 ·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 8 ·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 10 ·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 8 ·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 7. 25>

이 조례는 2005.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1. 7. 25>

부칙<2011.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 2012.3.12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3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5.8.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98·10·1, 99·8·16〉〈개정 2004.10.29.〉〈개정 2014.12.29.〉〈개정 2019.4.15.〉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

(단위: 1구획당, 원)

구분	기본 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30분 단위			1일 주차 요금	월정기 주차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이내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0:00
   나. 11월~ 3월 09:00~19:00
3.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단위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 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4. 대형차량(2.5톤이상, 25인승 이상)은 기준요금의 2배로 한다.
5.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